

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견

의안 번호	8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2. 15.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구평동 4통지역 경로당 신축을 위해 구평동 34-2번지의 토지 및 신축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함

(단위 : m², 천원)

사업명	구분	소재지	면적	지목 (구조)	시설개요	소요예산
계						282,107
구평동 4통지역 경로당 건립	토지	34-2	346 (104평)	전		139,092
	신축 건물	34-2	100 (30평)	철근콘크리트 스라브	지상2층 (각층 15평)	143,015

3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
-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
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200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회계명 :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

구 분		합 계			2003. 하반기			2004. 상반기			비고
	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 원)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 원)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 원)	
취	계	토지 1	346	139,092	1	346	139,092				
		건물 1	100	143,015				1	100	143,015	
		기타									
득	1.매입	토지 1	346	139,092	1	346	139,092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2.교환	으로	토지									
	취득	건물									
	기타	기타									
3.기타	취득	토지 1	100	143,015				1	100	143,015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처	계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4.매각	토지										
	건물										
	기타										
5.양여	토지										
	건물										
	기타										
6.교환	으로	토지									
	취득	건물									
	기타	기타									
사용허가 및 대부	토지										
	건물										
	기타										

2003년도 취득재산 목록(7-2)

(단위 : m², 천원)

재 산 의 표 시				추정금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현소유자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	비 고
구 분	소재지	지 목 (구조)	면 적(규모)						
계				282,107					
토 지	구평동 34-2	전	346(104평)	139,092	2003. 12월중	구평동 4통지역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	권경택	사하구	
신축건물	구평동 34-2	철근콘크리트 스라브	100(30평)	143,015	2004. 1월 ~ 2004. 4월	구평동 4통지역 경로당 건립	-	사하구	